

[서식 예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, 보관인선임 등

(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)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,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1. ◈◈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●●주택재개발조합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조합장 ●●●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금액: 금 ㅇㅇㅇㅇ원정

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소○○○ 임대차보증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원금 ○○○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



○. ○○.까지의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○○○원의 합계

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 등의 표시 :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.

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가 제3채무자 ●●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 카단○○○호에 기초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압류 금 ○○○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 ○○○원은 이를 압류한다.
- 2.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이를 압류한다.
- 3.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4.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계약명의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.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6.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.
- 7.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3-1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변호사 ◎◎◎를 위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.
- 8. 제3채무자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송달일자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명의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1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3채무자들이 ○○시 ○ ○구 ○○동 ○○ 외 여러 필지 일대 지상 토지에 건축하고 있는 동·호수 미정



의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, 채무자가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84㎡를 제3채무자들의 ●●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제3채 무자들에게 제공하고, 그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제3채무자들로부터 분배받 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.

- 2.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소○○○호 임 대차보증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판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입니다.
- 3.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미리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- 4. 채무자는 공동공급자인 제3채무자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, 현재 가압류상태로 동·호수가 배정되지 못한 상태이며, 채권자는 이미 제3채무자 ●●주택재개발조합에 대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상태이므로, 나머지 공동공급자인 제3채무자 ◆◆주식회사로부터받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자 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	집행력 있는 판결정본	1통
1.	송달.확정증명원	1통
1.	가압류결정문	1통
1.	가압류결정송달증명	1통
1.	가압류신청서사본	1통
1.	법인등기사항증명서	2통
1.	송달료납부서	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[별 지]

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 등의 표시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이행청구권

아 래

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84㎡를 ●●주택재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제공하고, 그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제3채무자로부터 분배받을 동·호수 미정의 아파트. 끝.


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조, 제244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
	·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), 재판을 고지 받은 날		
불복절차 및	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.		
기간	·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하여야 함		
	(민사집행법 제16조).		
ul Ó	·인지액: 〇〇〇원(v	☞민사접수서류	에 붙일 인지액 참조)
비 용	·송달료 : ㅇㅇㅇ원(r	☞적용대상사건	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
	·부동산에 관한 권리	이전청구권의	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
	재지의 지방법원은	채권자 또는 저	세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
	관인을 정하고 제3:	채무자에 대하여	ᅧ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
	의의 권리이전등기점	절차를 보관인어	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함.
기 타	위의 경우에 보관인	은 채무자명의	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
	채무자의 대리인이	됨(민사집행법	제244조제2항, 제3항).
	·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	선명령은 강제력이	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
	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여	에 협력하지 않을	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
	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	하여야 함(민사집형	l법 제244조제4항).

※ 제출법원{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}

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
- 4. 그러나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(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었는 곳의 지방법원)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결정과 권리이전명령을 내린



법원이 다를 수 있고, 두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. 또한,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에는 각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.